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8. 9. 23.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8월 1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8년 8월 21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8년 9월 21일 제59회(임시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제정과 사업장용 규격봉투중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용 규격봉투 신설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정에 따라 용어를 맞도록 변경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중 음식물류 배출요령에 전용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 방법 배경
-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의 색상은 노랑색(반투명)으로 변경
-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의 용량설정 및 규격봉투에 “음식물쓰레기 전용표기” 신설
- 사업장용 규격봉투중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용 규격봉투 신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1. 용어의 변경으로서 조례 제2조 제8호, 제8조 제2항 제5호의 내용중 음식물폐기물 등을 “음식물쓰레기”로 변경하는 것과,
2. 제9조 제3항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재활용 또는 감량을 하기 위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는 기기의 설치조항을 삭제하고 제4항의 내용중 제3항의 규정을 제2항의 규정으로 개정하며,

3. 제15조 제1항, 제2항의 내용중 음식물폐기물용 규격봉투를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로 하고, 제3항의 사업장용 규격봉투에는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용에 기계·장비류를 사용하여 압축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고, 그 외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에 담는대로 규정하며,
4. 제16조 제1호의 내용중 “음식물폐기물용 규격봉투는 오렌지색”을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는 노랑색(반투명)”으로 한다고 개정하며,
5. 제23조 제1항의 규격봉투의 대금 수납 등은 규격봉투대금을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하던 것을 개정내용은 규격봉투 대금고지 수납을 선납제와 후납제를 병행 실시하여 판매소로부터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6. 제34조(청문)는 의견진술로 통일토록 한 지침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7. 부칙 제1항은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과 제3항은 규격봉투의 사용 개시일을 공고후 90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고 한 내용을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의 사용 개시일은 새로이 제정되는 서울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개정이고,
8. 조례 제2조 제7항 별표1의 품목에서 “조리전 음식물폐기물”은 “식품쓰레기”로 “조리후 음식물폐기물은 ”조리후 음식물쓰레기“로 하고, 배출요령은 비닐, 금속 등 이물질 제거하고 수분을 제거후 배출한다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이물질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 배출토록 하였으며 재활용 가능하도록 음식물은 가능한 행구어서 배출토록 하고, 기타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질은 제거한 후 배출토록 배출요령을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2는 규격봉투 가격표시로서 사업장용 규격봉투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봉투와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용으로 구분하여 50ℓ, 75ℓ, 100ℓ에 대한 규격봉투를 신설한 것이며, 별표3은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로서 기존 조례에는 음식물폐기물용으로 표기한 내용을 개정안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50ℓ~100ℓ의 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은 종전과 같으나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용으로 표기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쓰레기 처리는 사회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파괴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가능한 쓰레기재활용을 통하여 재활용 가능한 물품과 가축사료 또는 비료 등으로 활용하여 자원재활용을 늘려 나가려는데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
----------	---

제출년월일 : 1998. 8. 19.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제정과 사업장용 규격봉투중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용 규격봉투 신설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2. 주요골자

- 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정에 따라 용어를 맞도록 변경
- 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중 음식물류 배출요령에 전용봉투 사용 및 분리 배출방법 변경
- 다.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의 색상은 노랑색(반투명)으로 변경
- 라.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의 용량 설정 및 규격봉투의 “음식물쓰레기 전용표기” 신설
- 마. 사업장용 규격봉투중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용 규격봉투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제21조
 -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준칙
(서울시 재활 67500-79 '98. 1. 21)
 - 구청장방침 제608호 ('98. 6. 12)
- 나. 합의사항 : 필요없음
- 다. 예산조치사항 : 필요없음
- 라.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중 “음식물류 폐기물”(이하 “음식물폐기물”이라 한다)을 “음식물류 쓰레기”(이하 “음식물쓰레기”라 한다)로 한다.

제8조 제2항 제5호중 “음식물폐기물 등”을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 동조 제4항의 내용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1항 내지 제2항의”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음식물폐기물용 규격봉투”를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음식물폐기물용 규격봉투에는 음식물폐기물을 담는다”를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담는다”로 하며, 동조 제3항 “사업장용 규격봉투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담는다”를 “사업장용 규격봉투중 사업장 생활계압축폐기물용에는 기계·장비류를 사용하여 압축한 사업장용 생활계폐기물을 담고, 그 외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용에 담는다”로 한다.

제16조 제1호중 “음식물폐기물용 규격봉투는 오렌지색”을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는 노랑색(반투명)”으로 한다.

제23조 제1호중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수납하고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를 “규격봉투 대금의 고지수납으로 선·후납제를 병행 시행하고, 후납제는 봉투판매소에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34조(청문)을 “의견진술”로 한다.

제2조 제7항 <별표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6. 음식물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찌꺼기	- 이물질 제거 및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 병뚜껑, 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	-----------------------------	---

제14조 제4항 <별표2>중 규격봉투의 가격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6조 제2호 <별표3>중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조례 제378호)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의 사용개시일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규격봉투 가격 (제 14조 제 4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제작비	수집·운반 수수료	처리비	판매이윤	판매가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5ℓ			10	5	90	
	10ℓ			20	10	180	
	20ℓ			40	20	360	
	30ℓ			58	30	540	
	50ℓ			84	50	900	
	75ℓ			137	75	1,350	
	100ℓ			177	100	1,800	
사업장용 규격봉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	10ℓ		50		210	
		20ℓ		100		420	
		50ℓ		254		1,080	
		75ℓ		382		1,610	
		100ℓ		507		2,150	
	사업장생활계 압축폐기물용	50ℓ			515		1,560
		75ℓ			773		2,330
100ℓ				1,030		3,120	
특수규격 봉투	50ℓ			1,324	180	2,430	

- 비 고 : 1. 규격봉투에 포함된 처리비 및 제작비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등에서 고시하는 반입료 등이 변동될 경우 변동비율에 따라 가감됨.
2.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의 용량별 봉투가격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3]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 (제 16조 제 2호 관련)

용량(ℓ)	용 도
5	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1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2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30	생활폐기물용, 공공용
5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기타생활폐기물용, 공공용
75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용, 공공용
10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용, 공공용

- 비 고 : 1.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생활계폐기물용” 대신 “음식물쓰레기전용”으로 표시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8. “음식물류 폐기물”(이하 “음식물폐기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전 식품,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p> <p>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p> <p>①(생략)</p> <p>②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기타 생활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u>음식물폐기물 등</u> <u>젖은 생활폐기물</u>을 배출하는 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p> <p>6. (생략)</p> <p>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 ② (생략)</p> <p>③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u>음식물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u></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⑤구청장은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설치 기준에 부적합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규격봉투·사업장용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음식물폐기물용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한다.</p> <p>②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u>음식물폐기물용규격봉투에는 음식물폐기물을 담는다.</u></p>	<p>제2조(용어의 정의)</p> <p>.....</p> <p>1. ~ 7. (현 행 과 같 음)</p> <p>8. (이하 “음식물쓰레기”라 한다)</p> <p>.....</p> <p>.....</p> <p>.....</p> <p>.....</p> <p>.....</p> <p>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p> <p>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음식물폐기물 등</u></p> <p>.....</p> <p>.....</p> <p>6. (현행과 같음)</p> <p>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삭제</p> <p>.....</p> <p>.....</p> <p>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p> <p>.....</p> <p>.....</p> <p>④(현행과 같음)</p> <p>.....</p> <p>.....</p> <p>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p> <p>.....</p> <p>..... <u>음식물쓰레기전용규격봉투</u></p> <p>.....</p> <p>②.....</p> <p>..... <u>음식물쓰레기전용규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담는다.</u></p>			

현행	개정안
<p>③사업장용 규격봉투에는 <u>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는다.</u></p> <p>④ ~ ⑤ (생략)</p> <p>제16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규격사양 재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규격봉투의 색깔은 생활폐기물용규격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장용규격봉투는 녹색, <u>음식물폐기물용규격봉투는 오렌지색, 공공용봉투는 옅은 청색으로 한다.</u></p> <p>제23조(규격봉투 대금의 수납 등) ①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 대금의 징수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p> <p>②생략</p> <p>제34조(청문) ①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수수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③음식물폐기물규격봉투의 사용개시일은 구청장이 별도로 사용개시 공고한 후 90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p>	<p>③사업장용 규격봉투중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용에는 기계·장비류를 사용하여 압축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고, 그외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에 담는다.</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16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규격사양 재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음식물쓰레기전용규격봉투는 노랑색(반투명),</p> <p>제23조(규격봉투 대금의 수납 등) ①규격봉투 대금의 고지수납으로 선·후납제를 병행 시행하고, 후납제는 봉투판매소에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제34조(의견진술) ①(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③음식물쓰레기전용 규격봉투의 사용개시일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조례 제2조 제7항 <별표1>중			조례 제2조 제7항 <별표1>중		
종 류	품 목	배 출요 령	종 류	품 목	배 출요 령
6. 음식물류	- 조리전 음식물 폐기물 - 조리후 음식물 폐기물	- 비닐· 금속 등 이물질 질을 제거하고 수분을 최대한 제거후 배출 - 음식물폐기물 전문 중간처리업자·재이용하는 자·재활용사업자에게 직접 배출 또는 감량화기기 설치 운영	6.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후 음식물 쓰레기	- 이물질 제거 및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분투 또는 수거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해구어 배출 - 비닐, 병뚜껑, 폐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규격분투 가격(제14조 제4항 관련) (단위 : 원)						(별표2) 규격분투 가격(제14조 제4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제작비	수집·운반수수료	처리비	판매이윤	판매가	구 분	제작비	수집·운반수수료	처리비	판매이윤	판매가
생활 폐기물용 규격분투	5ℓ		10	5	90	(현행과 같음)	5ℓ				
	10ℓ		20	10	180		10ℓ				
	20ℓ		40	20	360		20ℓ				
	30ℓ		58	30	540		30ℓ				
	50ℓ		84	50	900		50ℓ				
	75ℓ		137	750	1,350		75ℓ				
사규 업장용 분투	100ℓ		177	100	1,800	100ℓ					
	사계	10ℓ		50	210	(현행과 같음)	사계	10ℓ			
	업폐	20ℓ		100	420		업폐	20ℓ			
	장기	50ℓ		254	1,080		장기	50ℓ			
	생물	75ℓ		382	1,610		생물	75ℓ			
	활용	100ℓ		507	2,150		활용	100ℓ			
사업	50ℓ				사업		50ℓ		515		1,560
장폐	75ℓ		(신 설)		장폐	75ℓ		773		2,330	
생기	100ℓ				활물	100ℓ		1,030		3,120	
계용					계용						
특 수 규격분투	50ℓ		1,324	180	2,430	특 수 규격분투	50ℓ				(현행과 같음)

1. 규격분투에 포함된 처리비 및 제작비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등에서 고시하는 반입료 등이 변동될 경우 변동비율에 따라 가감함.
2. 음식물폐기물용 분투의 용량별 분투가격은 생활폐기물용 및 사업장용 규격분투 가격과 동일

1. 현행과 같음
2. 음식물쓰레기 전용분투의 용량별 분투가격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행	개정안																																
<p><별표3>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제16조제2호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용량</th> <th style="text-align: center;">용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5ℓ</td> <td>생활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ℓ</td> <td>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ℓ</td> <td>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ℓ</td> <td>생활폐기물용, 공공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ℓ</td> <td>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기타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5ℓ</td> <td>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ℓ</td> <td>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td> </tr> </tbody> </table> <p>비고 : (신설)</p>	용량	용도	5ℓ	생활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	10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	20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	30ℓ	생활폐기물용, 공공용	50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기타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75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	100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	<p><별표3>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제16조제2호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용량</th> <th style="text-align: center;">용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5ℓ</td> <td>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ℓ</td> <td>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ℓ</td> <td>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ℓ</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ℓ</td> <td>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기타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5ℓ</td> <td>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용, 공공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ℓ</td> <td>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용, 공공용</td> </tr> </tbody> </table> <p>비고 : 1.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생활폐기물용” 대신 “음식물쓰레기전용”으로 표시한다.</p>	용량	용도	5ℓ	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10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20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30ℓ	(현행과 같음)	50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기타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75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용, 공공용	100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용, 공공용
용량	용도																																
5ℓ	생활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																																
10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																																
20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																																
30ℓ	생활폐기물용, 공공용																																
50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기타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75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																																
100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																																
용량	용도																																
5ℓ	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10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20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30ℓ	(현행과 같음)																																
50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기타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75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용, 공공용																																
100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용, 공공용																																